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
----------	------

제출년월일 : 199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사유

학원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령이 전문개정('95. 8. 4. 법률 제4964호, '95. 12. 30. 대통령령 제14883호)됨에 따라 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 조정하고, 설비 및 교구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유해업소와의 인접한 장소의 범위등에 관한 조항등을 개정함으로써, 학원의 자율성과 주민의 사회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평생교육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중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른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으로 정함(안 제2조제3항)
- 나. 학원간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원의 시설 규모를 입시종합은 시지역 330㎡·읍지역 198㎡를, 시지역 210㎡·기타지역 150㎡로, 입시단과 교습과정을 신설하여 시지역 90㎡·기타지역 60㎡로, 어학은 198㎡를 90㎡로, 독서실은 165㎡를, 시지역 120㎡, 기타지역 60㎡로, 그외 컴퓨터, 음악, 주산은 99㎡를 60㎡로 완화함(안 제2조제1항 별표 1)

- 다.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대하여 교습과정 특성상 일반적 기준이 필요한 교습과정에 한하여 기준을 정하고,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은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등록 기준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라.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을 시설규모 완화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시설면적 증가에 따라 학원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증원할 경우에는 설비 및 교구를 적정하게 추가로 갖추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별표 3 및 제3조제2항)
- 마. 학원의 부제 교습횟수를 1시간 이내 교습과정은 8부제 이하에서 12부제 이하로, 교습소는 일률적으로 4부제에서 1시간 이내 교습은 8부제, 2시간 이내는 4부제, 3시간 이내는 3부제, 3시간 초과 교습은 2부제 이하로 완화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 바. 학원과 유해업소와의 인접한 장소의 범위를 학원과 유해업소가 각각 지상 1층의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수평거리가 20미터 이내인 장소와 위 이외의 장소인 경우에는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인 수평층과 직근상층 및 직근하층의 장소로 정함(안 제6조)
- 사.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해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제2항)
- 아.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수강료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전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된 수강료 등은 교습과정 변경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2호)

자. 동일 건물안에는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설립자 요건, 설립자 변경, 강사 자격, 수강료 징수는 법령에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함.

차.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카. 조례 시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개정근거

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95. 8. 4. 법률 제14964호)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83호)

4. 조 례 안 : 덧붙임

5.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조표 : 덧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다. 학원시설 규모에 대한 각계 의견 및 타시·도 현황 : 덧붙임

라. 입법예고안 사본 : 덧붙임

마.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덧붙임

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 덧붙임

사. 신·구조문대조표(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반당정원) : 별책

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별책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기준)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에 대하여는 교육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설비 및 교구가 당해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③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④지하실은 강의실·실습실·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습소는 영 제9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⑤학원시설은 동일건물의 동일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층에 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지도 및 교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직상층 또는 직하층으로 이어진 2개층 이상에 시설할 수 있다.

제3조(정원) ①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 정원은 별표 2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반당 정원은 학원의 시설면적 증가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다만, 증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설비 및 교구를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제4조(학원의 교습시간 및 부제 교습횟수) ①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 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부제 교습횟수는 반당 1일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시간 이내 교습과정 : 12부제 이하(단, 자동차운전학원은 14부제 이하)
2. 2시간 이내 교습과정 : 6부제 이하
3. 3시간 이내 교습과정 : 4부제 이하
4. 4시간 이내 교습과정 : 3부제 이하
5. 4시간 초과 교습과정 : 2부제 이하
6. 종합반(입시 및 검정고시의 전 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습하는 과정) : 1부제
다만, 종합반 교습이 끝난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시간 범위내에서 위 각호의 부제를 따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교습소 부제 교습횟수)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부제 교습횟수는 1일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시간 이내 교습 : 8부제 이하
2. 2시간 이내 교습 : 4부제 이하
3. 3시간 이내 교습 : 3부제 이하
4. 3시간 초과 교습 : 2부제 이하

제6조(교육환경정화 등)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원과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 라 한다)의 위치가 각각 지상 1층의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20미터 이내인 장소
2. 학원과 유해업소의 위치가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수평거리가 6미터 이내인 수평층과 직근상층 및 직근하층의 장소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보고) ①학원의설립·운영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 보고된 강사 및 생활지도사를 해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관할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등) ①학원의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10일전에 관할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②통보된 수강료 등은 교습과정 변경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9조(행정처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는 경고 및 시정 명령, 휴원, 폐원으로 하되 휴원 및 시정 명령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의 경중, 위반정도 및 반복 위반 횟수등에 따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3.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처분의 시기, 종류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1. 3. 25 조례 제18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 3. 26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충청북도사설강습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충청북도사설강습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충청북도 조례 제1702 (1989. 4. 1)]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3. 5. 7. 조례 제2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로 보며,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 신청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3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후 위치변경 및 정원변경에 따른 원칙변경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정한 시설·설비 기준에 의한다.

부 칙 (1996. 2. 2.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등록된 학원 또는 신고된 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설립 및 변경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